

인터넷전문은행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 · 운영에 따른 법적 쟁점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김 경 아*

目 次

I. 서 론	IV.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관련 법적 쟁점
II. 금산분리 제도	V. 결 론
III.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적 쟁점	

I. 서 론

최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분리 제도의 완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당시 일부이지만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제도가 완화되었고, 현재 SK 또는 LG 그룹과 같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6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에

■ 투고일자 : 2020년 11월 9일, 심사일자 : 2020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12월 17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술박사과정 재학

대하여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는 터널링¹⁾을 활성화 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경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라고 하였다.²⁾

아래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규모 확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제도를 인터넷전문은행법 도입 그리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 쟁점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은행업도 금융산업³⁾의 한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II. 금산분리 제도

1. 금산분리의 개념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문헌은 많지 않다. 대체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혼화되어 경제력의 집중을 창출 또는 강화 하거나 나아가 경제 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대체로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은산분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 금산분리 도입 배경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본, 영국, EU 등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

1) 터널링(tunneling)이란 회사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는 학술용어다.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내부거래를 이용해 오너 등 지배 집단이 전용, 도용,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윤시윤 (2017.5.11., “< 시사금융용어 > 터널링(Tunneling), 연합뉴스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37>)

2) 손인해(2020.6.11., “인터넷전문은행 허용한 ‘금산분리 완화’, 벤처캐피탈에도 빛장 여나”,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3962295>)

3) 은행업을 포함한 보험업, 증권업 등이 모두 금융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본을 구분하고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한다.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를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⁵⁾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은 1982년이였다. 당시 민영화되는 은행이 지배주주 내지 대주주의 사금고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⁶⁾

금융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1933년에 글래스 스티걸 법(Glass Steagall Act)을 제정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정확하게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하는 정책을 선택한 이래, 1956년 은행주회사법(BHCA : Banking Holding Company Act)이 제정되어 은행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증권업 운영을 금지하였고, 1999년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GLBA : Gramm Leach Bliley Act)이 제정되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구분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아닌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⁷⁾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제어하기 위해 채택하면서 은행과 산업 간의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2004년 1월)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은행 이외의 증권, 보험 등의 제2금융권의 영역에서도 소유제한을 하게 됨에 따라 금산분리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즉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금산분리의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다.⁸⁾

3.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정 내용

현행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소유가 규제되고 있는 법률로서는 「은행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있다.

4) 정찬형,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제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23면.

5) 최영주,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 454면.

6) 구 은행법 제17조의3(법 제3608호)

7) 박창욱 · 윤창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18. 12., 416면.

8) 박창욱 · 윤창술, 앞의 논문, 417면.

이러한 법률들은 금산분리 정책의 취지가 반영된 규정들을 다수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기 보다는 필요 시에 법안이 만들어진 결과로 규제체계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⁹⁾

아래에서는 현행 법률의 금산분리(은산분리) 제도에 관하여 정리하여 본다.

(1) 은행의 소유 규제

은행의 소유에 대한 규제 규정은 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에서 다루고 있다.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또한 산업자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금융주력자¹²⁾는 은행주식을 4%까지 소유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까지 소유할 수 있다.¹³⁾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선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10%까지 소유가 가능하다.¹⁴⁾

이때 예외로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 즉 금융자본으로 전환예정인 자,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비율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및 국가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 또는 그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동법 제15조의 한도를 적용한다.¹⁵⁾

이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도 은행법에서와 동일한 소유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¹⁶⁾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¹⁷⁾

9) 최영주, 앞의 논문, 437면.

10) 은행법 제15조 제1항

11) 은행법 제15조 제3항

12) 은행법 제2조 9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취지에 따라 은행의 소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대상인 산업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14) 은행법 제16조의2 제2항

15) 은행법 제16조의2 제3항

16)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내지 제8조의2

17)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2) 대주주 규제

대주주에 대한 규제제도는 직접 산업자본을 규제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소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가 중요한 배경이 되는 제도이다.¹⁸⁾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되고¹⁹⁾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이 제한되며²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고 있다.²¹⁾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자산의 일정한 비율로 제한되는 등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이 제한되고 있고²²⁾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²³⁾

증권거래법에서도 증권회사가 대주주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²⁴⁾

(3) 은행의 자회사 소유 제한

은행법의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증권을 15%를 초과하여 소유(이하 “자회사”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자회사 소유의 제한은 지분투자자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를 막고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 등 편중된 지원으로 인하여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한 수단이며²⁶⁾, 비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회사 등은 은행의 자회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회사 소유 제한은 중요한 금산분리(은산분리) 정책 수단이 된다.²⁷⁾

18) 최영주, 앞의 논문, 439면.

19) 은행법 제35조

20) 은행법 제35조의2

21) 은행법 제35조의4

22) 보험업법 제106조

23) 보험업법 제111조

24)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25) 은행법 제37조

26) 고동원, “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2007. 12. 197면.

27) 최영주, 앞의 논문, 441면.

Ⅲ.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적 쟁점

1. 인터넷전문은행의 의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러 금융관련법(특히 은행법)에서 견지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산업자본이 금융(특히, 은행)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입하기 전부터 큰 화제성을 몰고 다녔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 평가나 은행산업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²⁸⁾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²⁹⁾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로’라는 것은 영업점의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터넷 외의 오프라인에서의 영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업무의 대부분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또는 현금인출기(ATM) 등의 자동화기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영위하며 소수의 영업점을 보유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³¹⁾

이렇게 업무의 대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설치비용, 인건비 등 비용이 절감되어 이것이 가격인하로 전환되고 낮은 대출금리, 높은 예금금리, 금융수수료의 면제 등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28) 조대형(2018.11.29.),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와 은산분리 시사점”, KISO저널 (<https://journal.kiso.or.kr/?p=9188>)

29) 인터넷전문은행법 제2조.

30) 박창욱·윤창술, 앞의 논문, 405면.

31) 이준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3., 79면.

또한 이런 장점에 더하여 빠른 업무 처리, 편리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2)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1) 추진배경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은 2001년과 2008년에 추진된 적이 있지만 모두 무산이 되었다.³²⁾ 2015년에 IT를 활용하여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아울러 논의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필요성으로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인 IT 인프라를 활용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리 또는 수수료 등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혁신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와 ICT 기업, 핀테크 기업 등이 제휴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다.³³⁾

2) 도입과정

2000년 초반 금융위원회는 최초로 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와 대면 실명확인의 원칙에 따른 대안 마련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였지만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5년 초부터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여 그 해 4월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을 발표하였다.³⁴⁾

이후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거쳐 2016년 12월에 케이뱅크, 2017년 4

32) 2001년 롯데, SK 등과 벤처회사가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금산분리(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상의 제약 사항, 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발생한 논란등으로 무산되었으며,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글로벌금융위기로 은행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논의가 중단되었다.

3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 6. 18., 1면.

34) 박창욱·윤창술, 앞의 논문, 407면.

월에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취득하였다.³⁵⁾

(3) 인터넷전문은행법 내용

2018년 10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자본금의 특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4조에서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 기준³⁶⁾과 달리 25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다.³⁷⁾

최저자본금의 하향조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⁸⁾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소유할 수 있는 은행주식의 수를 인터넷전문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³⁹⁾ 이와 달리 은행법은 4%만을 인정하고 있다.⁴⁰⁾

35) 맹수석,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과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민병두 국회의원·정재호 국회의원 주최, 2018. 7. 11., 7면.

36)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은 1천억 원 이상이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자본금 250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7) 인터넷전문은행법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3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3면 참조.

39)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40)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3)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은행법상 동일차주는 개인·법인 및 그 개인·법인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일차주에 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⁴¹⁾ 이와 달리 은행법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또한 동일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게 신용공여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⁴³⁾

그리고 인터넷전문 은행이 추가적으로 신용을 공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위의 20%, 15%의 한도를 부득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일 부터 1년 내에 위 기준 이하로 그 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⁴⁴⁾

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제8조에서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 자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전면적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한 신용공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대주주에게 무상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⁴⁵⁾

5)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은행법은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⁴⁶⁾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로서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금융위원회가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4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7조 제1항

42) 은행법 제35조 제1항

43) 인터넷전문은행법 제7조 제2항

44) 인터넷전문은행법 제7조 제3항

45) 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

46)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본문

47) 인터넷은행법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한 그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2. 인터넷전문은행법 도입 및 운영 시 법적 쟁점

(1) 구체적 기준의 포괄적 명령위임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있어서 진입이 제한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기준 및 판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이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완화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⁴⁹⁾

(2) 위반에 대한 구제규정의 미약 문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자에 대한 징벌로서 자유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대비책을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고 일반 사법상의 손해배상법상의 원리에 일임하고 있다.⁵⁰⁾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특성상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이고 일부 고객들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사고 등의 원인이 접근 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인지 해킹인지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그 유형 및 경위를 입증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⁵¹⁾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인터넷은행법 제9조 제2항

49) 박창욱·윤창술, 앞의 논문, 414면.

50) 고동원,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토론회”, 제윤경 국회의원·금융소비자네트워크 주최, 2017. 7. 19., 42면.

51) 김홍식,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법과 기업 연구, 제8권 제2호, 2018, 43면.

(3) 금산분리의 제약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후 은행의 자본확충방안을 위한 논의 중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⁵²⁾ 이하에서는 금산분리(은산분리)에 관한 규제론과 완화론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한다.

1) 규제유지론

금산분리(은산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의 기본 논거는 과거 재벌기업들의 영향력 아래 은행이 저지른 도덕적 해이가 그 기저를 두고 있다.⁵³⁾ 즉 재벌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로 변화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공성에 반하는 행태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재벌들의 독점에 금융자본이 이용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금산결합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⁵⁾

2) 규제완화론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재벌들의 사금고화에 대하여 최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감시체제와 분위기에 비추어볼 때 재벌기업이더라도 계열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⁵⁶⁾

또한, 규제완화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산업자본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그러한 폐해를 금융감독 규제로 관리하면서 규제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택하는 것이 더 정책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⁵⁷⁾

52) 송수영 · 양채열,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보유한도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9, 373면 이하 참조.

53) 송수영 · 양채열, 위의 논문, 372면.

54) 천민아(2018.8.7.), “은산분리 완화시 인터넷은행은 재벌 사금고화로 전락”,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866842>)

55) 윤석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이슈와 추진방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6. 10. 22., 29~30면.

56) 윤창현,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 완화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34면.

57) 이준희, 앞의 논문, 89~90면.

아울러, 규제완화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이다.⁵⁸⁾ 이에 의하면 신규자본의 유입에 따른 공공부담의 해소,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의 실현, 제품이나 판매지역의 다각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3. 소결

금산분리(은산분리)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거나 없는 유럽 국가들과 가까운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산업 융합 그룹’이 형성되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영국 TESCO社의 경우, Royal Bank of Scotland와 50 대 50 합작으로 은행을 설립하여 예금, 모기지론, 소비자대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 약 25조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TESCO社의 대규모 유통체인 고정고객을 기반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명 편의점인 Seven-Eleven을 운영하는 SEVEN-I Holdings의 자회사 세븐뱅크는 ATM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을 활용한 24시간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금융과 산업의 융합 더 나아가 ICT와의 접목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반의 금융산업의 활성화 등 시너지 창출효과가 한국경제 전반에 큰 파급을 가져와 경제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관련 법적 쟁점

1.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의의

(1)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개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은 Corporate Venture Capital(이하, CVC라고 한다)이라고 하면서

58) 김용재, 은행법원론, 박영사, 2012, 148면.

전략적 투자자 관점에서 모기업의 자체 자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를 의미한다.⁵⁹⁾ CVC는 투자 중심의 재무적 목적을 갖는 일반적인 벤처캐피탈(Independent Venture Capital)과 달리, 전략적 목적과 재무적 목적을 모두 가진다.⁶⁰⁾

또한 IVC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CVC는 모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독투자를 선호한다.⁶¹⁾

(2)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현황

일반적으로 VC가 선호하는 투자 회수의 전략은 IPO 또는 매각인 반면, CVC는 모기업이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간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공동투자 등을 통한 지식 및 자산 이전을 전략으로 세워⁶²⁾ 업계 선두기업에 필요한 자기 파괴적 혁신이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위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⁶³⁾

CVC의 최초 등장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업 내부 연구소를 통해 신규사업을 모색하던 기업들이 서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를 추진하면서 부터이다.⁶⁴⁾ 현재 활동 중인 대표적인 CVC로는 Google Ventures, GE Ventures, Intel Capital, 삼성벤처투자, 타임와이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CVC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CVC 투자금 총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투자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2,470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007년까지 약 50여개의 CVC가 국내에서 활동한

59) 이도형(2017.9.8.일자), “사내 벤처캐피탈로 벤처투자 나서는 대기업”, Invest chosun (<http://www.investchosun.com/2017/09/08/3217491>)

60) 손수정, “기업벤처캐피탈(CVC) 기능에 대한 고찰과 정책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겨울, 2018, 31면.

61) 박재영,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오나화 쟁점과 개선방안(1)”,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9.12.31., 7면.

62) 손수정, 위 논문, 32면.

63) 이철영(2019.8.14.일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급증, 시사뉴스앤 (<http://www.sis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

64)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논의”, 주간금융브리프, 제27권 7호, 2018.4., 26면.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⁵⁾

(3)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필요성

일반적인 은행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벤처캐피탈은 고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술 또는 기업가치를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다.⁶⁶⁾ 벤처캐피탈 중에서도 전략적 투자를 시행하는 CVC의 경우 혁신적인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해서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다.⁶⁷⁾

CVC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게 단순히 자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갖는 경영 및 생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반의 지원이 가능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제품의 수요처 기능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다.⁶⁸⁾

2.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및 운영 시 법적 쟁점

(1) 금산분리 문제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⁶⁹⁾ 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자본차익을 노린 금융투자 등 경제력이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CVC가 금융업종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⁷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⁷¹⁾,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⁷²⁾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65) 한민선, “전략적 천사투자, 혁신을 얻다.”, 동아비즈니스리뷰, 96호, 2012, 88면.

66) 박재영, 위의 자료, 10면.

67) 김영환(2019.11.3일자), “제조업, ICT, K컬처 강점... 전세계 스타트업, 韓에서 스타트업 창업 원해”,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4566622682112&mediaCodeNo=257>rack=sok>)

68) 손수정, 위의 논문, 38면.

69) 박재영, 위의 자료, 11면.

70)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7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7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638면 이하.

CVC를 포함한 벤처캐피탈을 금융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면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⁷³⁾로 전환해야 하고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2) 후속투자 제한 문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제한을 받는다.⁷⁴⁾ 이로 인하여 대기업 계열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에는 후속투자가 불가능 하게 되었다.

(3) 자 · 손자회사 지분보유 의무화에 따른 부담 문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어야 하고 이때 자회사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해야한다.⁷⁵⁾ 상장사인 경우에는 20%이다. 또한,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⁷⁶⁾

이렇게 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낮은 지분율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지배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 및 자회사 소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⁷⁾

7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74)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75)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76)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제4호.

3. 소결

현재 법률 및 제도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CVC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게 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의 위반⁷⁸⁾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대기업이 CVC를 보유할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우선, 금융과 산업이 융합이 된다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어 더 많은 시너지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사업 진출 촉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지주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는 금융업 외에 에너지 사업, 제조서비스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였고 현재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되었다.⁷⁹⁾

또한, 후속투자에 있어서 제한을 규정하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해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VC는 재무적 목적보다는 모기업의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 의한 투자를 한다는 것에 특징을 가지는데 단순히 투자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재무적 목적으로만 기능하여 CVC만의 특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소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 지주회사의 과다

77) 전삼현,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2004.12., 16면.

78)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79) 문정식(2015.8.18.),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 최강 복합기업...산하기업 직원 34만 명,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818052700009>)

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문턱이 높아져서 결국 벤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V. 결 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도입이 되면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선두로 금융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금융업에 새로운 사업 분야가 창출되고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외치며 벤처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CVC는 벤처기업에게 단순히 자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갖는 경영 및 생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반의 지원이 가능하며 벤처기업 제품의 수요처 기능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CVC는 벤처기업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렇듯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규모를 고도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은산분리) 제도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산분리와 관련된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혁신을 거쳐 21세기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스마트한 규제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규제⁸⁰⁾에 대한 강화가 있는 후에 금산분리(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80) 최근 토스뱅크의 명의도용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토스'는 17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두고 있는데 2020년 6월 초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금액은 90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현재 토스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성 문제, 소비자 구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용재, 『은행법원론』, 박영사, 2012.

2) 학술논문

고동원, “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2007. 12.

김홍식,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법과 기업 연구, 제8권 제2호, 2018.

박재영,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오나화 쟁점과 개선방안(1)”,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9.12.31.

박창욱·윤창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18. 12.

손수정, “기업벤처캐피탈(CVC) 기능에 대한 고찰과 정책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겨울, 2018.

송수영·양채열,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보유한도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9.

윤창현,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 완화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34면.

이준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3.

정찬형,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최영주,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

3) 기타 자료

고동원,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토론문”, 제윤경 국회의원·금융소비자네트워크 주최, 2017. 7.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 6. 18.

맹수석,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과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민병두 국회의원·정재호 국회의원 주최, 2018. 7. 11.

윤석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이슈와 추진방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6. 10. 2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638면 이하.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논의”, 주간금융브리프, 제27권 7호, 2018.4.

한민선, “전략적 천사투자, 혁신을 얻다.”, 동아비즈니스리뷰, 96호, 2012.

<국문초록>

2020년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부문에 있어서는 가장 핫이슈가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8월 12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규모 확대,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제한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CVC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이라는 생활 방식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고 이는 금융생활도 변화시켰다. 네이버, 카카오, 케이뱅크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성장과 해당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과 CVC같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금산분리 제도 완화에 대하여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규모를 고도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앞으로 변화될 사회에 대비하는 스마트한 규제의 새로운 구축,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규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금산분리제도, 금융규제완화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nternet Only Bank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focusing on the issue of mitigating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

Kim, Gyeong Ah

I think THIS YEAR(2020) was the year with the most hot issues in the field of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policy. On August 12,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was implemented to pave the way for the expans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economic scale by fostering venture businesses. On December 9, the Fair Trade Act (CVC Act), which is centered on the limited permission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passed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In addition, the spread of Corona-19 Virus has brought the non-face-to-face lifestyle deep into our lives, which has also changed our financial lives. The growth of companies that provide financial services through non-face-to-face platforms such as Naver, Kakao, and K-Ban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long with this social phenomenon, discussions are still under way on easing the separation system for corporate-led venture capital of large holding companies such as Internet Only Banks and CVCs.

The separation system needs to be eased to enhance the economic scale and enhance customer service by giving opportunities to enter new businesses.

However, changes in the overall regulatory paradigm for the financial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new smart regulations to prepare for the changing society, soundness supervision, and protection regulations for financial consumers should come FIRST.

Keywords : Internet Only Bank, Corporate Venture Capital,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Relaxation of regulations

